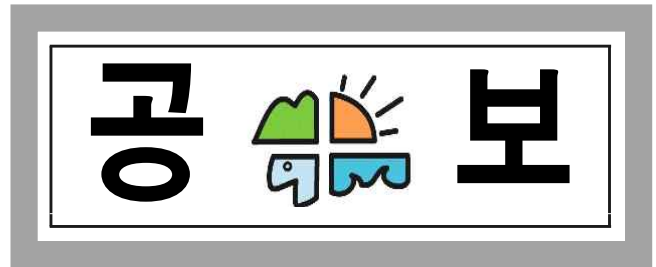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66호 2015년 12월 4일(금)

규 칙

- 속초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2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11
-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35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4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342호

속초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수도요금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수도전 번호부여 및 대장관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새로 설치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도전 대장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등재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카드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고 점검카드 교부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카드 교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조정내용, 정수처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고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점검카드회수부에 등재하고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연도 점검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① 수도요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 계량기의 점검) 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점검은 매 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점검할 수 있다.

1. 계량기의 기물번호 확인
2. 계량기 지침의 정상회전 여부

3. 계량기 지침 확인 및 판독
4. 계량기 봉인시설 이상 유무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6. 수도 사용자 등의 명의 변경 여부
7.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중인 수도전의 경우 임의 개전 사용여부
8. 기타 관련법규의 위반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인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7조(급수량의 확정) 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계량기 점검 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 사용량 중 많은 량의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급수업종 변경)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또는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변경된 업종·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7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의 경우에는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급수업종 변경신청은 신청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④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제9조(점검원의 보고) 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원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또는 그 밖의 민원사항 등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내역표) 정기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검침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검침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정) 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기점검일별 점검단위 순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제14조(수납부 기재사항)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수도요금은 조정명세서에 따라 사용요금, 급수장치손료 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5조(조정결의) 정기적으로 조정·징수하는 사용요금, 급수장치손료 등은 매월 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5일까지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 때 마다 조정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결의서) ① 수익금의 조정 또는 경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 결의서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업종별 조정종합집계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개시 조정) ① 새로 설치된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요금을 조정한다.

② 이미 설치된 수도전 중 급수중지를 해제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조정은 정기점검일의 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제18조(정산 조정) 수도전을 폐전하거나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의 발급일 이전인 경우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이후인 경우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의 사용량으로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20조(수납부) 수도요금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납부에 조정사항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일계전) 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수도요금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일계전을 작성한다.

제22조(수입일계표) 제21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일계표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된 수도요금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 소인) ① 제21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② 수납 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교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집계부) 수입금의 집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준용하며,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연체금 및 독촉) ① 고지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가 경과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4조에 따른 연체금은 미납된 수도요금과 정액료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연체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한 별지 제18호서식의 연체금조정결의서로 조정한다.

③ 연체금 조정결과는 수도요금의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체금 조정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체납액 정리부) 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부를 수용가 번호별로 납기내 금액 및 납기 후 금액으로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따른 체납부 정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7조(정수처분)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이하 "납입최고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없이 정수처분할 수 있다.

1. 납입최고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3. 건물 소유주가 정수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채권보전 상 부득이한 경우

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에 기재하는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9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開栓)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를 중지하고 수도전대장을 정리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개전)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개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된 경우 즉시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도요금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도요금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또는 누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당 연도의 요금징수계획에 따른다.

2. 조례 제43제1항제1호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속초시가 발주한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제31조(급수설비 폐전 절차)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상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수도계량기의 철거 신청에 대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속초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30.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11. 30. ~ 12. 14.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11. 2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조동홍
	주 소 (대장상주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82번지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90-1번지
	건축물 현 황	1층 시멘트벽돌조 작업장 265.12㎡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우리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라고 규정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 하고 있음

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단체의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 참여 기회 부여

2. 주요내용

가.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기회 부여[제2조1항1호]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3명의 위원은 법관 ·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에서 ‘3명의 위원은 법관 ·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로

시민단체 추천자 포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속초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17-701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감사팀)
- 연락처 : 033-639-2213 (FAX 033-639-2799)

4. 참고사항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 붙임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법관·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를 “법관·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속초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 ----- -----.
1. 3명의 위원은 <u>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u> 중에서 위촉한다.	1. ----- <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생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u>다른</u> -----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u>의한</u> 조사의뢰의 승인	1 ----- ----- ----- <u>다른</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u>의하여</u>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④ ----- <u>따라</u> ----- -----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 :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2.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및 장애인 단체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 야간조명시설 전기료 반영 및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현실화

3. 주요내용

- 장애인차별 조항 삭제 (안 제8조의1)
 - 공공체육시설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의 출입제한 규정 삭제
- 사용료 개정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추가 (안 제10조의 1·2항)
 -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고려, 사용료의 [별표1] 개정
 - 사용료의 종류에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조항 추가
- 사용료 반환시 사용개시일 이전·후 구분 조항 추가 (안 제13조의 3·4호)
 -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시 10% 공제후 반환

- 사용개시일 도래후 취소시 기준일까지 금액 미반환, 잔여기간 총일수
요금의 10% 공제후 반환
- 공유재산 수탁자 선정시 경쟁체제 강화안 추가 (안 제19조의1)
 - 공공체육시설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규정 추가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전화:033-639-2130, fax:033-639-234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기타행위”를 “그 밖의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란케하는 자”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취된 자”를 “만취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중계방송료
3. 부대시설 사용료

4. 상행위 등 사용료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사용개시일 도래 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취소 기준일까지의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잔여 기간은 총 예약일수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3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철거일로부터”를 “철거한 날부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일부를”을 “일부를 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으로,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9조에 따라”로,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속초시생활체육협회의 시설 위탁관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속초시통합체육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별표】

체육(부대)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목 적)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종합경기장	육상 경기장	육상경기	50,000	75,000	· 1일 기준 (4시간 이하 시 50%적용)
	축구 경기장 (천연잔디)	축구경기	200,000	250,000	·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축구경기 외	250,000	300,000	
인조잔디 축 구 장	축구경기		40,000	60,000	·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 축구경기 야간 (사용료 + 전기료) : 1시간당 5만원(평일·토·일· 공휴일 동일)
	축구경기 외		150,000	200,000	
인조잔디 야 구 장	야구경기		50,000	70,000	· 1경기 3시간 기준 · 야간 : 사용료에 1경기당 5만원 가산
생활체육관	체육행사		30,000	50,000	· 2시간 기준 (체육행사외는 1일 기준) · 체육행사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 일 경우 30% 가산
	체 육 행 사 외		150,000	200,000	
궁 도 장	궁도경기		20,000	30,000	· 1일 기준 (4시간 이하 시 50% 적용)
테 니 스 장			2,500	3,000	· 2시간 기준 (1명)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풋살경기장	풋살경기		10,000	20,000	· 2시간 기준 · 기준인원 10명, 14명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인원 1명당 10% 가산)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족구경기장	족구경기		10,000	20,000	· 2시간 기준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비 고	1. 조기시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를 징수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를 가산) 3. 조명시설 사용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청소년(학교체육활동 포함)은 80%를 감액한다. 5. (축구경기·야구경기·체육행사)외 행사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	---

2. 중계방송료

(단위:원)

종 별	구 분	단 위	중계방송료		비 고
			TV	라디오	
체육행사·경기	국제경기	1 회	50,000	25,000	중계방송료는 중계 주관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국내경기	1 회	20,000	10,000	
공연 등 행사	국 외	1 회	50,000	25,000	
	국 내	1 회	20,000	10,000	
영 화 촬 영		1 회	30,000		
경 기 촬 영		1 회	20,000		
녹 화 라 디 오 녹 음			TV 및 라디오 : 중계방송의 반액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품 명 별	구 분	단위수량	사용료액	비 고
샤 위	1회	1명	500	(어른, 청소년, 군인) (초·중·고생) ※ 종합경기장, 인조 잔디축구장, 인조 잔디야구장에 한함. <개정 2009.07.23>
마 이 크	1일		—	
음 향 시 설	1일		—	
트 레 이 닝 장	1인1회	일반	500	
		학생	300	
전광판,스코어판	1인1회		20,000	
접의자 대여	1회	개당	100	
책 상	1회	개당	300	
T 탁 자	1회	개당	1,000	

4. 상행위 등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사 용 료 액	비 고
프로그램 판매행위	장내 반입 부수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장당가격 × 부수
광고문 게시 (10m×1m 이내)	·1년 : 500,000원	시설사용허가 기간에 한함 (1개당)
	·5일 이내 : 50,000원 ·1일 초과 : 10,000원	
기타 선전광고 행위	·소형(3.5㎡ 이하) : 30,000원 ·중형(3.5㎡ 초과~5㎡ 이하): 50,000원 ·대형(5㎡ 초과~12㎡ 이하): 150,000원 ·초대형(12㎡ 초과) : 200,000원	
애드벌룬 및 유사물 에 의한 광고행위	5,000원	1일(개당)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일반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	
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 등)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 ----- ----- ----- -----그 밖의 행위 -----.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제3조에 따라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 -----사람을-----.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6. ----- -----사 랑 과 ----- -----.
7.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7. ----- 사람을-----사람은 -----.

8. (생략)

9.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략)

제3조(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1. ~ 6. (생략)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8. (현행과 같음)

9. -----

----30명-----.

10.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
가할 때

2.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
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
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
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
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
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
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

1.-----그 밖의

2.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의

제6조(시설의 개방) ① -----

-----없으면-----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에 따른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방제한 등) -----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 등 사용료로 구분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1. <삭제>

2. -----문란하게 하는 사람-----만취된 사람

3. -----
-----휴대한 사람

4. 그-----밖의

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중계방송료

3. 부대시설 사용료

4. 상행위 등 사용료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③제2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

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
다.

<신 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
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
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
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 략)

6.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수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
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 -----

-----해당시설-----

-----.

②제1항에 따른-----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
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그-----밖에

②-----제3호, 제5호, 제6
호에 따른-----
-----, 제2호
에 따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
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
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
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
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기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
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 (생 략)

제4호에 따른-----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
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
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
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사용개시일 이전에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4. 사용개시일 도래 후 취소하고
자 할 때에는 사용취소 기준일까
지의 금액은 반환하지 않으며,
잔여 기간은 총 예약일수 이용요금
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5. 그 밖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전부를 반
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②제1항에 따라-----

-----.

③-----제2항에 따른-----

-----.
-----철거한
날부터-----

-----.

제19조(위탁관리) ① -----

-----일부를 체육활성
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에 따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전에 이루어진 속초시생활체육회의 시설 위탁관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속초시통합체육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제2조에 따른 위탁관리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현행

(별표) 체육(부대)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사용구분 (목 적)		구 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종합경기장	육상 경기장	육상경기	어린이	15,000	22,500	
			청소년	30,000	45,000	
			어 른	50,000	75,000	
	축구 경기장 (천연잔디)	축구경기	어린이	80,000	100,000	
			청소년	120,000	150,000	
			어 른	150,000	200,000	
기타행사			200,000	250,000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경 기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인조잔디 야 구 장	체 육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체 육 외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200,000	300,000	
생활체육관	체 육 행 사		어린이	10,000	15,000	
			청소년	20,000	30,000	
			어 른	30,000	50,000	
	체 육 외 행 사		어린이	62,500	75,000	
			청소년	87,500	105,000	
			어 른	125,000	150,000	
궁 도 장	궁 도 경 기		—	20,000	30,000	
테 니 스장	테 니 스 경 기		—	15,000	22,500	
카누경기장	카 누 경 기		—	사용불가	사용불가	선수전용
풋살경기장	풋 살 경 기		어린이	5,000	무 료	
			청소년	7,000	무 료	
			어 른	10,000	20,000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경 기		—	무 료	무 료	
반코트 농구장	반 코 트 농 구		—	무 료	무 료	
	① 조기는 주간으로 본다. ② 육상, 궁도경기는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적용) ③ 축구경기 및 기타행사는 2시간을 기준 (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 ※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④ 테니스코트는 1면당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적용) ⑤ 풋살경기는 1시간을 기준으로 1일 1회로 제한하나, 종료 이후 시간에 사용신청자가 없을시 사용자 자물 후 추가 사용 할 수 있다. ※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⑥ 풋살경기 기준인원은 10명으로 하고, 1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유료사용시 초과인원은 1인당 10%를 가산함) ⑦ 야간사용료는 평일 및 휴일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함 ⑧ 야구경기는 1일1회 3시간을 기준(초과 1시간당 50%를 가산) <개정 2009.07.23> ⑨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산하단체,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및 경기					

개 정(안)

(별표) 체육(부대)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사 용 구 분 (목 적)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일공휴 일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육상경기	50,000	75,000	◦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 적용)
	축구경기장 (천연잔디)	축구경기	200,000	250,000	◦ 2시간 기준 (경기외는 1일 기준)
		축구경기외	250,000	300,000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경 기		40,000	60,000	◦ 2시간 기준 (경기외는 1일 기준)
	축구경기외		150,000	200,000	◦ 축구경기 야간(사용료+전기료): 1시간당 5만원 (평일·토·일·공휴일 동일)
인조잔디 야 구 장	야구경기		50,000	70,000	◦ 1경기 3시간 기준 ◦ 야간 : 사용료에 1경기당 5만원 가산
생 활 체육관	체육행사		30,000	50,000	◦ 2시간 기준 (체육외는 1일 기준)
	체육행사외		150,000	200,000	◦ 체육행사외 참가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30%를 가산
궁도장	궁도경기		20,000	30,000	◦ 1일 기준 (4시간 이하시 50% 적용)
테니스장			2,500	3,000	◦ 2시간 기준 (1명)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풋살경기장	풋살경기		10,000	20,000	◦ 2시간 기준 ◦ 기준인원 10명, 14명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인원 1인당 10% 가산)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족구경기장	족구경기		10,000	20,000	◦ 2시간 기준 ◦ 야간에는 기본사용료의 50% 가산

1. 조기시간에 조명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야간사용료를 징수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50%를 가산)
3. 조명시설 사용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어린이는 무료로 하고, 청소년, 학생(학교체육활동 포함)은 80%를 감액한다.
5. (축구경기, 야구경기, 체육행사)외 행사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 신설 >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table><tr><th>구분</th><th>사용료</th><th>비고</th></tr><tr><td>일반경기</td><td>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td><td></td></tr><tr><td>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 등)</td><td>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5</td><td></td></tr></table>	구분	사용료	비고	일반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		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 등)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5	
구분	사용료	비고								
일반경기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									
기타사용 (프로경기, 행사 등)	관람수입 총액의 10분의 25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4. 12. 4.)으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및 운영 수탁자 의무 등(안 제4조~제7조)
-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안 제9조)
-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차마의 출입, 불꽃놀이 금지 및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안 제17조 ~ 제2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관광과(전화 : 033-639-2027, FAX : 033-639-238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033-639-2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속초시가 관리하는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관리·운영 수탁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란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① 해수욕장은 속초시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해 속초시가 정한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 범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위탁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속초시 해수욕장협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운영업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등을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 ①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게시)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①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2.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감면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6세 이하의 어린이

제13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국민여가캠핑장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의 환불규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차마의 출입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5조(불꽃놀이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시장이 허가한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제의 의결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심의
3.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시 의견청취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속초해양수산사무소장
2.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3. 속초기상대장
4. 속초소방서장
5. 속초보건소장
6. 속초경찰서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2조(보험가입) 관리자 또는 위탁관리·운영 수탁자는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 용 료	
샤 위 장	어 른	1회	2,000	
	군인, 청소년	1회	1,500	
	어린이	1회	1,000	
물 품 보 관 소	보관용 물품	1일	2,000	
파 라 솔		1개 / 1회	10,000	
튜 브	대형	1개 / 1회	10,000	
	중형		7,000	
	소형		5,000	
주 차 장	이륜차	당일(8시간)	1,000	
		체류(8시간~24시간)	2,000	
	경 차	당일(8시간)	1,500	
		체류(8시간~24시간)	3,000	
	승용차, 소형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당일(8시간)	3,000	
		체류(8시간~24시간)	6,000	
	중·대형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초과 화물차)	당일(8시간)	6,000	
		체류(8시간~24시간)	12,000	
국민여가 캠 핑 장	제1캠핑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1차량	성수기	비수기
			40,000	30,000
	제2캠핑장	1개소/1일	20,000	
	제2캠핑장 야영장 소형(5인이하) 중형(6~10인미만) 대형(10인이상)	1일	4,000	6,000
			8,000	

<비 고>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어른 :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나. 군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 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다.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마. 성수기 : 여름 피서철(7.1~8.31), 단풍철(10.1~10.30)

바.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2. 제1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국민여가캠핑장 환불규정(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 성수기 환불규정

구 분	계약체결당일 취소 또는 10일전 취소	7일전 취소	5일전 취소	3일전 취소	1일전 취소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주 중	100% 환불	90% 환불	70% 환불	50% 환불	20% 환불
주 말	100% 환불	80% 환불	60% 환불	40% 환불	10% 환불

2. 비수기 환불규정

구 분	2일전 취소	1일전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주 중	100% 환불	90% 환불	80% 환불
주 말	100% 환불	80% 환불	70% 환불

(별지 제1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제15조 관련)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사용장소

사용수량 개

사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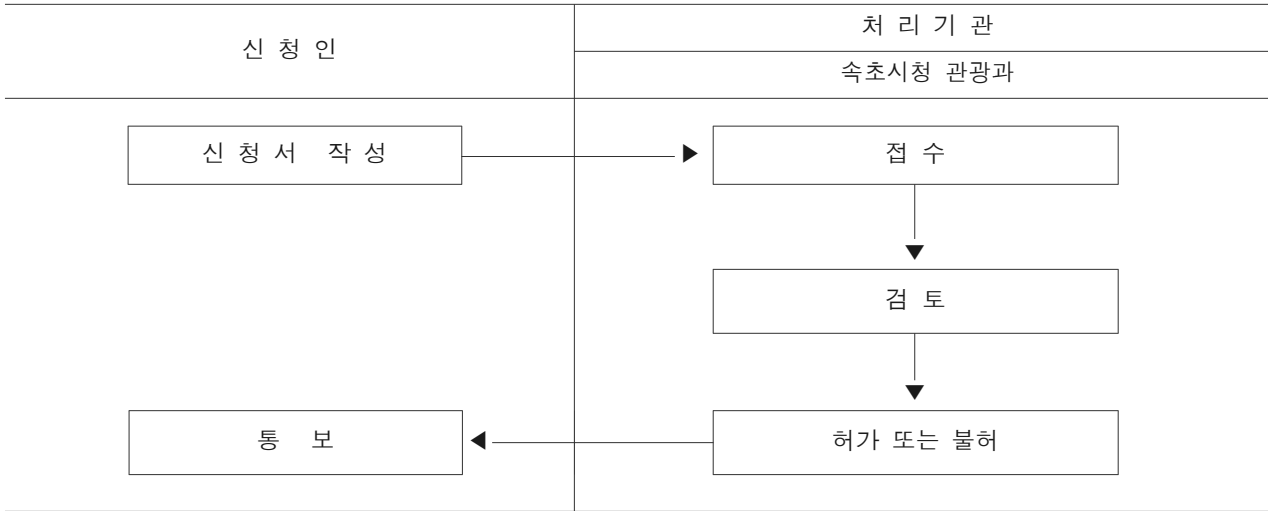
목 적

사용기간

사용조건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제15조 관련)

제 호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증

○ 성 명 :

○ 주 소 :

○ 수 량 :

○ 인 원 :

○ 연 락 처 :

○ 사용장소 :

○ 사용기간 : . . .부터 . . .까지

○ 조 건 :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직인)